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서

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도원주의료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.)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간호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간호의 기술적인 숙련과 포괄적인 간호행위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,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함과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1. 간호학과 학생의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
2. 임상현장실습지도자의 현장실습 지도 및 실습 평가
3. 의료원 공공의료사업에 부합되는 자로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
4. 기타 기관 간 교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 제2조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 각 담당 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석 및 비밀유지)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, 상호교류를 통해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당사간의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한 협약으로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, 협약기간은 자동 승계된다. 단,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효력을 정지 및 폐기 할 수 있다.

제7조(효력의 정지 및 폐기) 제6조에 의한 효력 정지 및 폐기를 일방이 요청할 시 이를 원하는 기관이 상대 기관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의조정)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양 기관은 위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, 상기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6월 3일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원주캠퍼스 부총장 한태용

한태용

강원도원주의료원
원장 권태형

권태형